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2001. 10. 12. 판결선고	인
2001. 10. 12. 원본영수	

사 건 2001다49012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김○○
2. 최○○
3. 최○○
4. 최○○
원고들 주소 성남시 수정구 ○○
원고 최○○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충진, 김종철, 강대성, 송재현, 김교창, 박동수
피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이○○,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1. 7. 13. 선고 2000나37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망 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주요우울증이란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을, 그 구분에 따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연금 또는 장애급여금(같은 항 제10호 내지 제17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장애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아 1998. 3. 7. 망인에게 장애급여금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제출한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장애급여금 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함께 망인이 자살한 후 이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여 약관 제1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1999. 4. 6. 이미 납입한 보험료 743,027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

